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세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2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오세희·이병진·서영교

채현일 • 박용갑 • 박지원

김동아 • 전진숙 • 전현희

강준현 · 허성무 · 김문수

문금주 • 이광희 • 송재봉

신정훈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'부정유통 신고센터'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,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또한, 2021년, 2023년,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.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.

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 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3(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
- 2.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
- 3. 포상금액
- 4.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5.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대한 관한 사항

-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1조제2항 중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"을 "공단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신 설>	제70조의3(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하기 위하여 「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관련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(이하 이조에서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
	<u>3. 포상금액</u>

- 제7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 략)
 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8조, 제9조, 제17조, 제25조, 제 26조,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 한의 일부를 상인회, 연합회 및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 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4.	ユ	밖에	포상금	지급에	관한
	사힝	<u> </u>			

- 5. 신고포상제도 운영에 대한관한 사항
-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·운 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 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71조(권한의	위임 •	위탁)	1
(현행과 같음)			

②
<u>공단</u>